## 원격수업 운영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격수업의 정의) 원격수업이란 인터넷, 정보통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·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, 수업 중 70% 이상 원격(방송·통신)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. 단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·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,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### 제2장 위원회

- 제3조(위원회) 원격수업의 콘텐츠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원격교육관리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 <개정 2023.12.27.>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  - ②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전문가 등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.
  - ③ 교무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 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
  - 2.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
  - 3.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

# 제3장 운 영

- 제7조(수업개설 및 절차) 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강좌의 형태로 개설할 수 있다.
  - ② 열림교양대학장 및 각 학부장은 학기 별 개설과목 제출 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대

- 상 강좌를 교무처에 공문으로 제출한다.
- ③ 위원회는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원격교육 강좌의 요건을 심의하여 확정한 후 교무처에 통보한다.
- 제8조(개설기준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학기별 열림교양대학 및 각 학부(전공)가 개설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. 천재지변, 전염병, 교육부 지침 등의 경우에는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기별 총 교과목 학점 수의 '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'에 제한되지 아니한다.
  - ② 원격수업은 수강신청 또는 정정 마감일 기준 전공 교과목 20명, 교양 교과목 30명 미만의 강좌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③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운영하지 않는다.
  - ④ 원격수업의 시수는 책임시수 및 제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.
- 제9조(강의개시 및 종료)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시와 종료는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.
- 제10조(학점인정) 학부과정의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제11조(수업운영) ①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원격수업의 콘텐츠 분량은 1학점(차시) 당 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이 최소 25분 이상이되어야 하며 1학점 당 총 학습시간(콘텐츠 재생시간,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, 퀴즈등을 종합)은 50분 이상이여야 한다. 다만, 토론, 프로젝트 기반 온라인 수업 등은 강의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하다.
- 제12조(출석) ①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수가 정한 학습기간 내에 모든 콘텐츠를 수강 하여야 한다.
  - ② 학습기간 이후라도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13조(시험) 교무처와 혐의하여 시험방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**제14조(강의평가)**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관리 및 운영) 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담당하며, 기타 사항은 본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16조 1(콘텐츠 개발 및 지원) ① 학교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, 기자 재,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다른 곳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,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제16조에서 제16조의 1로 이동 2023.09.20]

제16조의 2(콘텐츠 질관리) ①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원격수업 콘텐츠는 수정 및 보완, 폐기 및 재제작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품질 관리를 시행한다. ② 재제작이 결정된 경우, 콘텐츠의 50퍼센트 이상의 변경·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관련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09.20.]

- 제17조(지적재산권)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본교에 귀속된다. 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
  -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.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과 교육부 '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'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